

Korean Tax Update

January 2018, Issue 43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전문보기]

(추진배경) '17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개정대상) 개정대상은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주요 개정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③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④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⑤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⑦ 공익법인·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⑧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추진일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임.

기획재정부,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한국 제외 [보도자료]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1.23 일 오전(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 EU 는 '17.12.5 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 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하여 발표한바 있으나,
-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었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 총 50 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마련·발표 [보도자료]

「국세행정 개혁 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 1. 29.(월) 제 5 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 개 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을 확정하였음. 개혁 TF 권고안은 2 개 분과인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상세내역은 보도자료 참고)

- 첫째,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함.
-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셋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2018 년 2 월 8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1) 개정이유

- 전자담배 종류와 궤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 분의 10 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궤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궤련형 전자담배와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궤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 개비당 897 원으로 함(안 제 60 조, 제 61 조)
-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궤련형 전자담배는 200 개비로 함(안 제 62 조 제 2 항)
-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 88 조 제 4 항)

-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 100 조)
-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 100 조의 9)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2018 년 2 월 14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1)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 41 호 서식)
- 나.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 43 호의 4 서식 등)

[예규·판례]

[판례 1]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1 조 제 2 항에 따라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두 45063 판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 13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 조 제 2 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 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 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6 호), 이 사건 조

향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4 조의 2 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1 조 제 1 항이 그 감면 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됨.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심판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 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조심 2017 서 1399, 2017. 12. 28.

- 「법인세법」 제 92 조 제 2 항에서 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 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심판례 2] 종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대상임

조심 2017 지 1053, 2017. 12. 28.

-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슈퍼마켓운영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별임대사업자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고객에 대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임대매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통산업 등 종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대상임.

[심판례 3]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은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7 서 3679, 2017. 12. 20.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발권수입(쟁점금액)을 항공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로 인식한 점,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부채의 감소액이라기 보다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상 쟁점금액을 항공운송부대수입으로 인식한 점, 설령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이 결손보전을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결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4]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법인이 승계취득한 해당 산업용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7 지 0443, 2017. 12. 15.

-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기존에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례 5]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조심 2017 중 4383, 2017. 12. 11.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 15조 제 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함.

[예규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 1.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 20 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 61 조 및 제 77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2, 2018. 1. 9.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 17 조제 1 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 12. 26.

-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예규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2017. 12. 18.

- 내국법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 제 52 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같은법 제 89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 27835 호, 2017.2.7. 공포된 것) 제 7 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예규 5]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 10. 20.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4 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함.

[삼성 KPMG 조세본부 소식]

[경정]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익을 합병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등 85 억원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

- FS Tax 본부 김철 상무(02-2112-0930), TAX 본부 TCoE 김성현 상무(02-2112-0958)

[불복]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한 조성 중 토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며, 대금(공사대금 상계)의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수인 지위가 이전된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경정거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취득세 등 30 억원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

- Domestic Tax 2 본부 이성태 전무(02-2112-0950), 최세훈 S.Manager(02-2112-6728)

[기고] BUSINESS Watch,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리턴즈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기고] 한국경제 머니, 자녀 결혼 시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기사보기]

Domestic Tax 2 본부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정병수 상무(02-2112-7506), 이승윤 Manager(02-2112-6842)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